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995년 7월 6일부터 현재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고, 100억원(전문·전기·전기통신공사 등은 55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같이 제정하고 7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본고는 주요내용을 간추려 게재한 것으로, 개정된 전문은 우리 협회 진흥부에서 제작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제14조 (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이상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5일 이상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에게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게 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설계서를 배부하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설명서를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

④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 물 물량내역서 및 동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그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액으로서 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고시금액 :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한 금액

* 총액단가입찰제(내역입찰제) 대상공사 규모를 현행 토목공사 1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30억원 이상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대외개방규모인 약55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상향 조정했다.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5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및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액 미만인 공사 및 용역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0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 현재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고, 100억원(전문·전기·전기통신공사 등은 55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계약이행실적 및 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기준금액인 현행 예정가격의 85퍼센트를 순공사비 수준인 88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여 적정공사비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했다.

제50조 (계약보증금)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한 공사계약 등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 10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예정가격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총공사·총제조 등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④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 한 때에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37조 제4항의 규정은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계약보증금을 현행 계약금액의 10퍼센트(장기계속계약은 3퍼센트)에서 예정가격의 10퍼센트로 단일화하고,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제72조(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된 공동계약의 경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계약시 건설업 등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자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 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

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기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담합한 자

8. 제12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장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제재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타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 등 부실이행과 관련한 것은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사유에 의한 것은 임의제한하도록 보완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상호 등을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면허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상호 등의 변경 등을 통한 위장입찰참여를 배제하도록 했다.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제42조 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8조 (실시설계·시공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있어서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제42조 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실시설계·시공입찰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89조 (설계비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